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

의원용

1. 의료기관 대응 개요

1. 증상 및 징후 확인

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) 또는 폐렴
또는 급성호흡부전

NO ▶ 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

YES ▼

2. 노출력 확인

증상 시작 전 14일 이내에
- 중동지역에 여행(체류)하였거나
-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와 접촉하였는가

NO ▶ 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

YES ▼

3. 환자 격리 및 즉시 신고

-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착용(N95마스크, 가운, 장갑, 눈 보호장비)
-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
- 욕실 또는 뚜껑이 있는 변기가 있는 1인실 또는 밀폐된 공간에 환자 배치
-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

***의료진은 호흡기 증상(기침!)이 있는 환자를 진료전에 마스크를 꼭 착용!!해주세요.**

2. 신고 기준 및 방법

• **신고기준**

1.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*방문 + 발열 +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 증후군

또는

2.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*의 의료기관에 근무한 직원, 내원환자, 방문자 + 발열 + 호흡기 증상 (기침, 호흡곤란)

또는

3.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자** +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(기침, 호흡곤란)

* 중동지역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 (바레인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의 서안과 가자지구, 요르단, 쿠웨이트, 레바논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시리아, 아랍에미레이트, 예멘)

밀접접촉 **적절한 개인보호장비 (가운, 장갑, N95 마스크, 눈 보호장비 등)를 착용하지 않고
-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경우
- 같은 방 또는 진료/처치/병실에 머문 경우(가족, 보건의료인 등)
-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

• **신고처 :** 관할 보건소

• **신고시기 :** 지체없이

• **신고방법**
- 관할 보건소로 유선으로 먼저 신고
- 감염병 발생 신고(보고)서 작성 후,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(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) 등의 방법으로 신고

3. 조치사항

의심환자 진료시

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전까지
- 의료진은 N95 마스크, 장갑, 눈 보호장비(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를 착용하고
- 의사환자는 수술용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

중동호흡기증후군이란 ?

• **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(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; MERS-CoV)에 의한 호흡기감염증**

• **감염경로**
-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음
- 단,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,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

• **임상적 특성**
- 대부분 환자가 중증급성하기도질환(폐렴)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거나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
- 주 증상으로는 **발열, 기침, 호흡곤란**
- 그 외에도 두통, 오한, 인후통, 콧물, 근육통 뿐만아니라 식욕부진, 오심, 구토, 복통, 설사 등
- 합병증 호흡부전, 패혈성 쇼크, 다발성 장기 부전 등
  *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 신부전 동반 사례가 사스 보다 높음
- 기저질환(당뇨, 만성폐질환, 암, 신부전 등)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MERS-CoV 감염이 높고 예후도 불량

• **잠복기 5일 (최소 2일 – 최대 14일)**

• **치명률 30 % ~ 40 %**

• **예방 백신 및 치료제 없음**

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
- 환자 진료 전 · 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
  *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
- 의사환자 등 진료시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, 장갑 및 1회용 가운, 고글(또는 안면부 가리개)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
- 체온계,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
-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
-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

• **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**
-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
  *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
- 기침, 재채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말기
-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
- 발열 및 기침,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, 즉시 병원 방문

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

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

병원용

1. 의료기관 대응 개요

1. 증상 및 징후 확인

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) 또는 폐렴
또는 급성호흡부전

NO ▶ 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

YES ▼

2. 노출력 확인

증상 시작 전 14일 이내에
- 중동지역에 여행(체류)하였거나
-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와 접촉하였는가

NO ▶ 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

YES ▼

3. 환자 격리 및 즉시 신고

-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착용(N95마스크, 가운, 장갑, 눈 보호장비)
-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
- 격리병실에 환자 입원
-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

***의료진은 호흡기 증상(기침!)이 있는 환자를 진료전에 마스크를 꼭 착용!!해주세요.**

2. 신고 기준 및 방법

• **신고기준**

1.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*방문 + 발열 +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 증후군

또는

2.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*의 의료기관에 근무한 직원, 내원환자, 방문자 + 발열+ 호흡기 증상 (기침, 호흡곤란)

또는

3.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자** +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(기침, 호흡곤란)

* 중동지역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 (바레인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의 서안과 가자지구, 요르단, 쿠웨이트, 레바논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시리아, 아랍에미레이트, 예멘)

밀접접촉 **적절한 개인보호장비 (가운, 장갑, N95 마스크, 눈 보호장비 등)를 착용하지 않고
-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경우
- 같은 방 또는 진료/처치/병실에 머문 경우(가족, 보건의료인 등)
-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

• **신고처 :** 관할 보건소

• **신고시기 :** 지체없이

• **신고방법**
- 관할 보건소로 유선으로 먼저 신고
- 감염병 발생 신고(보고)서 작성 후,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(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) 등의 방법으로 신고

3. 조치사항

격리병실이 있는 병원

- **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착용하고 진료**
  *N95마스크, 장갑, 보호복(가운), 눈 보호장비
- **환자는 격리병실에 입원**
- **환자 검체 채취**

격리병실이 없는 병원

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전까지
- 의료진은 N95 마스크, 장갑, 눈 보호장비 (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를 착용하고
- 의사환자는 수술용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

중동호흡기증후군이란 ?

• **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(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; MERS-CoV)에 의한 호흡기감염증**

• **감염경로**
-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음
- 단,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,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

• **임상적 특성**
- 대부분 환자가 중증급성하기도질환(폐렴)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거나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
- 주 증상으로는 **발열, 기침, 호흡곤란**
- 그 외에도 두통, 오한, 인후통, 콧물, 근육통 뿐만아니라 식욕부진, 오심, 구토, 복통, 설사 등
- 합병증 호흡부전, 패혈성 쇼크, 다발성 장기 부전 등
  *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 신부전 동반 사례가 사스 보다 높음
- 기저질환(당뇨, 만성폐질환, 암, 신부전 등)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MERS-CoV 감염이 높고 예후도 불량

• **잠복기 5일 (최소 2일 – 최대 14일)**

• **치명률 30 % ~ 40 %**

• **예방 백신 및 치료제 없음**

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

- 환자 진료 전 · 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
  *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
- 의사환자 등 진료시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, 장갑 및 1회용 가운, 고글(또는 안면부 가리개)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
- 체온계,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
-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
-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

• **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**
-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
  *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
- 기침, 재채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말기
-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
- 발열 및 기침,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, 즉시 병원 방문

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